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4. . . (제 회)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4. 3.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로 전환됨에 따라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존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변경하며, 개정된 법률에서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신설한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임

3. 주요내용

- 가. 협의회의 업무 (제2조)
- 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 제4조, 제5조)
- 다. 전문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 제7조)
- 라.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업무의 위탁 (제16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첨부 :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부터 제5조의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를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로 한다.

제3조제1항 위원회 설치 관련 규정을 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제2항을 삭제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피해자단체 본부 또는 지부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를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로 하고 제6조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문단의 구성)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협의회 자문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피해자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단체의 대표, 피해자단체

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제7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자문위원 2인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중전의 제6조)부터 제12조(중전의 제10조)의 “위원회”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5조(중전의 제13조)의 법 제18조제2항을 법 제20조제2항으로 하고, 제1호의 법 제3조제2항을 법 제3조제1항으로, 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한적십자사에 위탁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피해자 등록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변동 신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사항
4.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위원회의 업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2. (생략)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u>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u> 가 피해자 실태조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협회의의 업무) -----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 <u>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u> 가 -----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3조제4항제1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u>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차관, 외교부차관 및 행정안전부차관으로 한다.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u>지명하는 차관</u> 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제3조(협회의의 구성)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u>한국인원자폭탄피해자지원협의회</u> (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은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안전부의 국장급 공무원과 피해자단체 본부 또는 지부가 소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삭 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解囑)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위원회</u> 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u> 업무를 총괄한다. ② (생략) ③ <u>위원회의</u>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u>위원회의</u>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피해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또는 증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수당·여비</u>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회의의 운영) ① 협회의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u>협회의</u> 를 대표하고 <u>협회의</u> 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협회의</u> 의 회의는 <u>위원 2인</u> 이상이 ----- ----- ----- ④ <u>협회의</u> 의 사무를 ----- ----- ----- ----- ----- ⑤ <u>협회의</u> 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u>여비</u>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규칙) 이 영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u>위원회의</u> 구성 및	제5조(운영규칙) ----- ----- <u>협회의</u> 의 -----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협의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문단의 구성) 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문단은 협의회 자문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피해자단체의 대표, 피해자 후손단체의 대표, 피해자단체가 추천한 전문가 2인 및 대한적십자사 사무총장을 포함한다.

②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 설>

제7조(자문단의 운영) ① 자문단
의 단장(이하 “자문단장”이라
한다)은 자문위원 중에 호선하
여 선출한다.

② 자문단 회의는 자문위원 2인 이상 또는 자문단장이 요구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자문단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자문단 회의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제6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생략)

1. ~ 4. (생략)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실태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헌조사, 설문조사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연구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피해자의 지원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에서 수당·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피해자 실태조사) ① (현행
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이 -----

② _____

--- 보건복지부장관이 -----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

-----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피해자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 야 한다.	----- -----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u>제9조</u> (정밀검사 항목) 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밀검사”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 를 말한다.	<u>제11조</u> (정밀검사 항목)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에 준하 는 검사로서 피해자의 건강보호 를 위하여 <u>위원회</u> 가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6. ----- ----- ----- ----- <u>보건복지부장관이</u> -----
<u>제10조</u>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 진 및 정밀검사는 법 제12조제3 항에 따라 <u>위원회</u> 가 지정한 의 료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u>제12조</u>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 ① ----- ----- <u>보건복지부장관이</u> -- ----- -----.
② <u>위원회</u> 는 매년 12월 31일까 지 지정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해의 정기검진 및 정밀검사에 관한 세부 사항 을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피	② <u>보건복지부장관</u> 은 ----- ----- ----- ----- -----

해자(이하 “등록된 피해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 검진 또는 정밀검사를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은 분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u>위 원회</u> 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 ----- ----- ----- <u>보건복지 부장관</u>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1. ~ 2. (생 략)
<u>제11조</u> (의료지원금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 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금 (이하 이 조에서 “의료지원금” 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지 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 양급여비용 중 등록된 피해자 본인이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u>제13조</u> (의료지원금의 지급) ① -- ----- ----- -----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u>제12조</u> (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 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 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u>제14조</u> (진료보조비의 지급) ①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진료 보조비(이하 이 조에서 “진료보 조비”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간

